

울산지방법원 2024. 10. 30 선고 2024가단3847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10. 16.

판 결 선 고 2024. 10. 3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
나. 2024. 4. 12.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00,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"청구원인"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박정홍

별지